

## 大田廣域市避妊藥劑器具普及手數料徵收條例廢止條例案

의안 번호	531
----------	-----

提出年月日：1994年 12月 日

提出者：大田廣域市長

### 1.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

- 62年度부터 始作된 政府 家族計劃事業의 一環으로 保健福祉部에 서 避妊藥劑器具를 無料로 普及하던중
- 82年度부터 一部 藥劑器具에 대하여 普及手數料를 받도록 하였고 徵收 根據를 條例로 定하였음.
- 母子保健法令 및 子宮內裝置 普及手數料 徵收에 관한 保健福祉部 指針에 의거 92年4月28日 避妊藥劑器具 普及手數料 徵收 條例를 現行 子宮內裝置 施術(1件) 2,000원, 콘돔(1갑) 200원 및 먹는 避妊藥(1싸이클) 230원으로 改定하여 徵收 收納하고 家族計劃 事業 재활용비와 避妊施術 不作用者 事後 管理費로 使用中에 있음.
- 90年代 들어 人口增加率이 鈍化됨에 따라 家族計劃事業이 自律 實踐 爲主로 轉換되고 있는 時点에 이르러 政府에서 동 普及手數 料 徵收 指針을 95.1.1부터 廢止키고 하였으므로, 關聯 避妊藥劑 器具普及手數料徵收 市條例를 廢止하고자 함.

### 2. 參 考 事 項

- 關 聯 法 規
  - 母子保健法 第12條, 23條
  - 母子保健法 施行規則 第8條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

대전광역시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 련 법 규

### 모자보건법

제12조 (피임시술 및 피임약제의 보급)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장.군수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자에게 피임시술을 행하거나 피임약제를 보급할 수 있다.

제23조 (비용의 징수) ① 시장.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상대방으로부터의 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.

### 모자보건법 시행규칙

제8조 (피임약제등의 보급)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장.군수는 피임수술을 받는 것이 부적당한 자 또는 터울 조절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인 피임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피임약제 또는 기구 (이하 “피임약제등” 이라 한다)를 무료 또는 실비로 보급할 수 있다.